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9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3. 1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2003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여 고성군세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주민세(소득세할)의 과세내역 통보기간 변경(안 제22조의2)
- 나. 농업소득세 부과에 따른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지역 변경(안 제51조)
- 다.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개업 등의 신고시 구비서류 감축(안 제58조)
- 라.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와 과세대장 직권등재 사항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삭제(안 제93조, 제94조)
- 마. 사업소세 납기일자 변경(안 제98조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
- 입법예고 : 고성군공고 제2003-38호(2003. 1. 30~2. 18), 특기할 사항 없음

4. 본문 : 붙임참조.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3항중 “말일”를 “15일”로 한다.

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“읍·면”을 각각 “군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법인등기부등본

제93조 및 제94조를 각각 삭제한다

제98조제2항중 “10일”를 “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현행	개정안
<p>1.~6.(생략)</p> <p>7. <u>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</u></p> <p>8.~9.(생략)</p> <p>제93조(신고의무) ①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한 때</u> 2. <u>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</u> 3. <u>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</u> 4. <u>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</u> 5. <u>건축물의 구조·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·면적을 증감한 때</u> 6. <u>건축물을 양도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</u> <p>②<u>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, 종류,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1.~6.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법인등기부등본</u></p> <p>8.~9.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3조(신고의 의무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234조의 21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<p>제94조(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)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4조(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
<p>제98조(납기) ①(생략)</p> <p>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8조(납기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31일----- ----- -----.</p>